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78
----------	-----

제출년월일 : 1999. .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802,204,003,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9,826,074,650원이며, 이월사업비 65,461,237,320원, 순세계잉여금 56,905,543,670원, 국고보조금잔액 11,148,000원으로서 총 122,377,928,99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덧붙임

참고사항 : 덧붙임

- '98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9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1999-86 호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8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 (안 제2조 제2항 별표)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학원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5조) ○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함 (안 제6조) ○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학원 수강료의 1년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 (안 제8조 제2항) ○ 우수학원 지정·육성 조항 신설 (안 제10조) ○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흥 조항 신설 (안 제11조)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p>○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p>	<p>○ 수수료라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안 제2조 제1항)</p> <p>○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 [별표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제1항)</p> <p>○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안 제5조)</p>
<p>○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p>	<p>○ '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802,204,003,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9,826,074,650원이며,</p> <p>○ 이월사업비65,461,237,320원, 순세계잉여금 56,905,543,670원, 국고보조금잔액 11,148,000원으로서 총 122,377,928,99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p>
<p>○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p>	<p>○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88,152,000원, 사망조의금 446,485,000원, 직업교육확충비 61,575,610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51,833,000원, 수해복구지원비 31,953,000원, 손해배상금 26,635,000원으로 총806,633,610원을 지출하였음.</p>

·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편 361-703/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전화 (0431) 272-0414/ 전송 (0431)271-8696
 의사과장 : 안용균 / 의안담당 : 연승훈 / 기안자 : 이찬동

문서번호 의사 81433-263
 시행일자 1999.08.28. (영구)
 경유
 받음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1999. 8. 28	결재 · 공람	
	번호	4/282		
처리과	기획관리과			
담당자				

제목 의안이송

1. 기관 81433-710('99.8.12)호의 관련입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104 -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4 -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원안가결
104 -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원안가결
104 - 4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104 -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원안가결

덧붙임 : 의안 각 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